

정기안전점검 용역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내용	용역명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계약금액	일금 팔백구십만원(₩ 8,900,000별도)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10/100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과업종료일까지('26.06.30)			
	기타사항				
발주자 화성도시고속도로(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불임서류 : 1.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 내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발주처 [“갑”]	상 호	화성도시고속도로(주)	대 표 자	이 영 주 (인)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비봉매송로 179		
	계약대상자 [“을”]	상 호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번호	176-87-00064
		대 표 자	김 선 무 (인)	전 화 번 호	031-886-7422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69번길 18(아탑동, 동아채인) 301호		

1.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갑”과 “을”은 정기안전점검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안전점검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 중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말한다.
2. “기본업무”라 함은 “을”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정기안전점검을 말한다.
3.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갑”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②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 (통지 등)

-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 (채권양도)

- ① “을”은 정기안전점검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정기안전점검 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6조 (계약보증금)

- ① “을”은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times 10/100$)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인정한 경우, 계약이행보증서(서울보증보험)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을”은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 ①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을”에 귀속된다.
- ②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8조 (선금금 보증)

“을”은 선금금 수령 시 ‘선금금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을”의 근로자)

- ① “을”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을”은 “갑”이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 ③ “을”은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근로자를 ‘과업수행계획서’에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 ① “갑”과 “을”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 ② “갑”이 감독을 한다고 해서 “을”의 용역수행에 관한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제11조 (용역의 착수 및 보고)

- ① “을”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과업지시서 3. 과업수행일반지침에 따라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반드시 용해야 한다.
- ④ “갑”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휴일 및 야간작업)

“을”은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과업내용의 변경)

- ① “갑”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을”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특정용역항목의 변경
 2. 용역 공정계획의 변경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시 “갑”은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을 변경한다.
- ③ “을”은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지시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갑”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제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갑”과 “을”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제16조 (지체상금)

-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제1항의 경우에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할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산출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의 수행기간 이후에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제17조 (계약기간의 연장)

- ① “을”은 제16조 제3항의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제18조 (검사)

- ① “을”은 정기안전점검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임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임회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을”이 임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을”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인수)

- ① “갑”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을”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 시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지체 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0조 (일반적 손해)

- ① “을”이 계약의 수행중이거나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기간 내 용역 미완수
 - 2.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 3. “을”이 수행한 용역의 하자로 “갑”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손해발생시 “을”의 귀책사유가 1호 및 3호 시에는 계약금액을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 (불가항력)

-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정기안전점검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제22조 (대가의 지급)

- ① 용역대가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금 액	지급조건	비 고
준공금	‘26년 해당분의 100%	2026년 대상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이 완료된 후 “을”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현금지급	
계	9,790,000원	VAT.포함	

- ② “을”은 “갑”에게 용역결과물을 제출한 이후, 제1항의 용역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을”의 내부 자금결제지급 기준에 의해 입금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급기한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 는 없는 것으로 한다.)
- ③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을”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갑”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갑”은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제23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을”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 ④ “갑”은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을”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 ②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용역의 일시정지)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갑”의 필요에 의하여 “갑”이 지시한 경우

-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을”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 ① “을”은 계약서상의 규정의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8조(안전관리)

- ①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본 조사지역의 각종 안전시설은 현지여건에 따라 “을”의 책임 하에 설치하며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본 용역에 투입되는 인부, 임대장비는 산재보험 및 장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3. 본 용역 시행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이 경우 제1심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으로 한다.
-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